

**2019년  
1월 1일부터  
화평범이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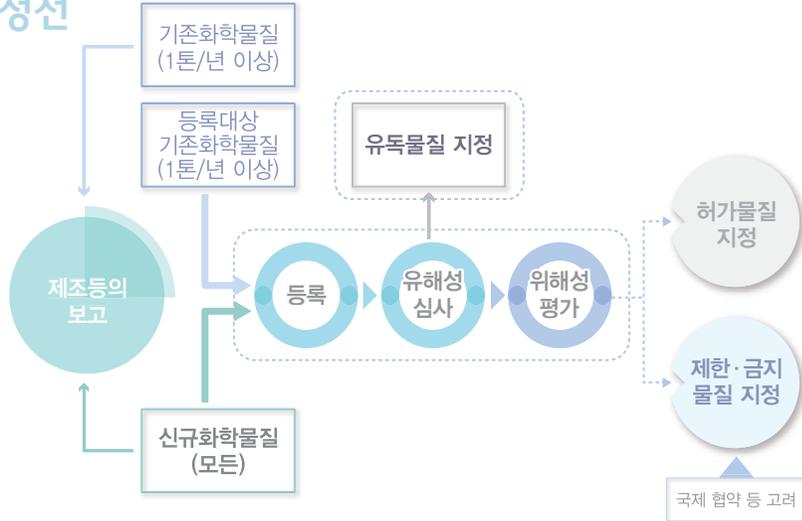
#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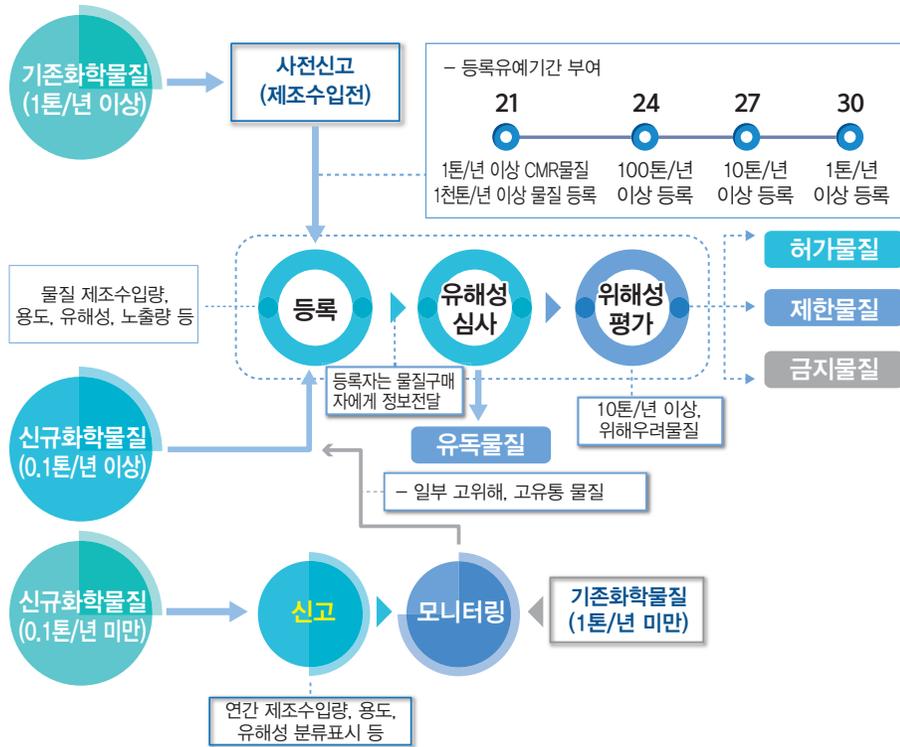


## 화평법

### 개정전



### 개정후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



##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 1. 등록·신고



### 화학물질의 등록(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 화학물질 등록 의무자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 등록 기간

-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유예기간 (사전신고를 한 경우) 부여  
- 0.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전 등록

#### 등록유예기간



연간 1,000톤 이상 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CMR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1,000톤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100톤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10톤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30년 12월 31일까지

#### \*CMR물질

-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Carcinogenicity), 돌연변이(Mutagenicity), 생식능력 이상(Reproductive toxicity)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질

#### □ 등록 시 제출자료(법 제14조)

	제출정보	등록기준	세부사항
1	제조·수입자의 정보	신규화학물질 (연간 0.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 명칭, 소재지, 대표자
2	화학물질의 정보		- 명칭, 식별정보(예, 분자식, 구조식 등)
3	화학물질의 용도		- 용도분류체계, 확인된 용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4	분류 및 표시		- 전 세계적 분류 및 표시 기준 항목 (예, GHS)
5	물리적·화학적 특성		- 톤수 범위별 차등화 (최대 47개 항목) - 시험자료 요약서 제출 (전문을 보유한 경우 제출)
6	유해성		- 개인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7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
8	위해성		연간 10톤 이상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록한 자의 변경등록) 연간 제조·수입량의 톤수범위 변경,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변경

\*(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록된 자의 상호·성명 또는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자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법 제10조제3항 및 법 제15조)

### □ 공동등록(법 제15조)

-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등 등록신청자료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함

[공동제출 방법]



### □ 사전신고(법 제10조제3항)

- ▶ **(개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기본정보(물질명, 제조·수입량 등)를 신고해야 등록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법률 시행 시 해당 물질을 이미 제조·수입하고 있는 자('16, '17, '18년에 1회라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한 자)는 '19.6.30 까지 사전신고를 해야 함(법 부칙 제7조)
- ▶ **(신고·변경신고 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IT)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신고(변경)서 제출

사전신고 내용	변경신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의 명칭</li> <li>·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li> <li>· 화학물질의 분류·표시</li> <li>· 화학물질의 용도</li> <li>·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li> <li>·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 수입자의 상호, 연락처</li> </ul>	<p>〈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수입 톤수범위 변경</li> <li>·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변경</li> <li>·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 수입자가 추가 또는 삭제되는 경우</li> </ul> <p>〈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변경</li> <li>· 새롭게 소비자 용도가 확인된 경우</li> </ul>

- ▶ **(제재)** 환경부장관은 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법 제13조제3항)
  -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에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수입 전에 등록을 해야 함
- ▶ **(등록서류 간소화)** 사전신고 결과 및 15개의 시험자료(연간 1~10톤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에서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양에 관계없이 1~10톤에 해당하는 15개의 시험자료를 제출(다만, 해당 물질을 소비자 용도로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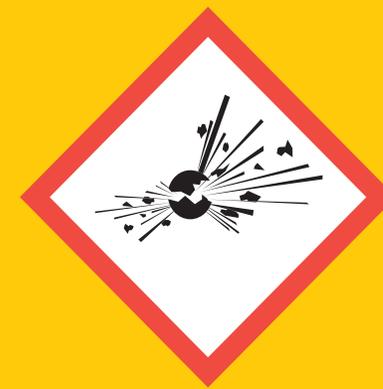
### □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

- ▶ 종전의 유해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봄
  - ▶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하여야 하고, 신고한 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연간 제조·수입량의 톤수범위 변경, 용도, 유해성·위해성 등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함
- 신고자료** ① 종전의 유해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 ② 통지서를 제공한 제조·수입자의 정보(통지서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소유자 정보), ③ 신고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신고기한** 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를 받을 당시의 제조·수입량 또는 최근 3년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기한 내 신고

연간 1,000톤 이상 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CMR 물질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1,000톤 물질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100톤 물질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10톤 물질	2028년 12월 31일까지

##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 2



###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법 제10조제4항)

#### □ 신규화학물질 신고 대상 및 시기

- 연간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신고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해성심사 면제 확인을 받은 다음의 신규화학물질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19.1.1 ~ '20.12.31)에 신고(부칙 제5조제2항)
  - 연간 100kg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 화합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다음의 신규화학물질

####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

1.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5퍼센트 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2퍼센트 이상인 고분자화합물
2.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25퍼센트 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10퍼센트 이상인 고분자화합물
3.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상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4.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에 해당하는 미반응 단량체가 중량비 0.1퍼센트 이상 잔류하는 고분자화합물

#### □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IT)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변경)서 제출

사전신고 내용	변경신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li> <li>·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li> <li>· 화학물질의 분류·표시</li> <li>· 화학물질의 용도</li> <li>·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해성 자료 등</li> </ul>	<p><b>&lt;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고&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한 자의 상호·성명 또는 소재지, 대표자의 변경</li> <li>·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자가 추가되거나 삭제</li> </ul> <p><b>&lt;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고&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용도분류체계, 소비자 용도 변경, 새롭게 소비자 용도 확인) 변경</li> <li>· 신고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변경(분류·표시에 변경을 주는 유해성 정보 확인, 위해성 관련 새로운 정보 확인)</li> </ul>



##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 별도 절차없이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 업체 스스로 다음에 해당하는 등록등 면제대상인지 파악하여 사후점검 등을 대비한 증빙서류 보유

- 1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하는 화학물질
- 2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4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학물질
  - 불순물, 부산물, 광물, 광석, 유리, 식물성 지방·기름, 수소 및 산소 등
  -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그 자체 또는 자연에서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인력, 기계 또는 중력을 이용하거나 물에 용해, 부유 선별하여 얻은 물질
  - DNA 또는 RNA를 구성하는 염기, 염기와 당이 결합한 뉴클레오사이드 등

###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아 면제

□ 제조·수입 전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IT)으로 '한국환경공단'에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 ('18.12.31.까지는 14일)

## 2. 등록 등 면제



### □ 등록등면제확인 대상·주기 및 제출서류

- (공통 제출자료)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및 제조·수입예정량

대 상	주 기	제출서류
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연단위	수출국, 수출량 등
2)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3)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최초 1회	구체적 용도 설명, 실험·분석·연구에 소요기간, 화학물질 또는 상품의 사진이나 브로슈어 등
4)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화학물질·제품 개발 등	연구개발 계획 단위	구체적 용도 설명, 연구개발에 소요기간, 안전관리자 현황, 취급시 주의사항(저장·보관방법, 폭발·화재·누출 시 대처방법), 이동·이송할 장소 및 예상량, 연구성과물 및 잔량의 사후처리방안, 사후처리결과 (100 kg 이상, 연구개발 종료 후 제출) 등
5) 일부 고분자화합물	최초 1회	단량체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수평균 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시험자료 등
6) 표면처리된 물질 - 표면처리의 대상물질과 표면처리 물질 모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등록된 화학물질인 경우 ② 0.1톤미만 신규화학물질로 신고된 경우 ③ 등록대상이 아닌 화학물질인 경우 ④ 사전신고한 기존화학물질로서 등록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	최초 1회	표면처리의 대상물질과 표면처리물질에 관한 등록(등록통지서),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신고통지서) 또는 등록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가운데 해당하는 서류, 공정도식도, 반응구조식, 표면처리비용 등
7) 비분리중간체	최초 1회	공정도식도 등
8)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	최초 1회	공정도식도, 유출·노출 차단 방법 등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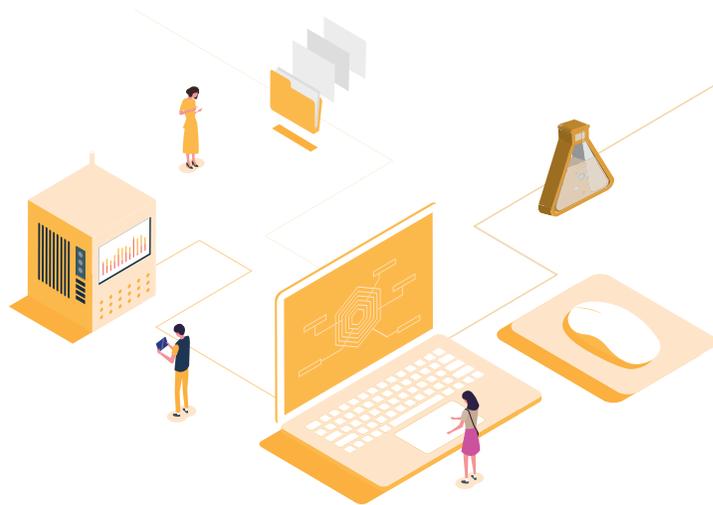


## □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 대상(규칙 제7조의2)〉

- ①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제조·수입예정량, 연구기관이 변경된 경우
- ② 표면처리된 물질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또는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영 제11조제1항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에서 다른 목으로 변경된 경우
  - \* 등록된 경우,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로 신고된 경우,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기존화학물질로 사전신고되어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
- ③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였을 때,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자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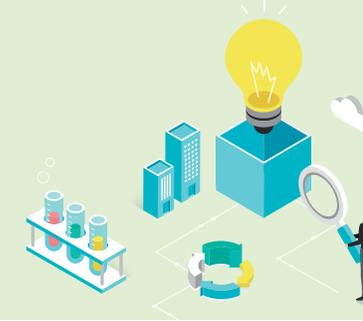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의 정보제공(법 제30조제1항)

<b>개 요</b>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법 제10조)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정보 제공
<b>기간·방법</b>	상대방이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료를 제공해야 함
<b>제공정보</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위사용자·판매자의 <b>성명 또는 상호</b></li> <li>2. 해당 <b>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b></li> <li>3. 해당 화학물질의 <b>사용량·판매량</b></li> <li>4. 해당 화학물질의 <b>구체적 용도</b></li> <li>5. 해당 화학물질의 <b>노출정보</b></li> <li>6. 해당 화학물질의 <b>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b></li> </ol>

#### 영업비밀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미제공 가능. 다만,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3. 정보제공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의 정보제공(법 제30조제2항)

<b>개 요</b>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 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에 정보 제공
<b>기간·방법</b>	상대방이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료를 제공해야 함
<b>제공정보</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조·수입자의 <b>성명 또는 상호</b></li> <li>2. 해당 <b>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b></li> <li>3. 해당 화학물질의 <b>제조량·수입량</b></li> <li>4. 해당 화학물질의 <b>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b></li> <li>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b>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b></li> <li>6. 해당 화학물질의 <b>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정보</b></li> <li>7.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b>규제 정보</b></li> </ol>

#### 영업비밀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미제공 가능. 다만,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는 자의 정보제공(법 제29조)

### 개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구분	함량 기준
1) 등록(법 제10조제1항·제5항) 또는 신규화학물질로 신고(법 제10조제4항)된 화학물질	함량에 관계없이 정보 제공
2) 기존화학물질로 신고(법 제10조제2항)되어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이 혼합물의 지정·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내용에 따른 혼합물 분류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정보 제공

### 기간·방법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제출(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료로 제공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와 함께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유해성정보를 첨부하여 제공)

## 3. 정보제공



### 제공정보

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및 고유번호
4.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5.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
7.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 정보
8.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
9.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10.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 □ 변경된 정보의 제공(법 제29조제3항)

-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정보에 다음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

- 1 새로운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
- 2 새로운 위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
- 3 새로운 사용용도가 확인된 경우
- 4 새로운 규제정보가 확인된 경우

### □ 영업비밀의 보호

현행	개정('20.1.1 시행)
-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 미제공 가능	-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 미제공 가능
- 유해화학물질은 반드시 정보 제공	-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영업비밀로 정보 미제공 가능
	- 유해화학물질,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은 반드시 정보 제공

##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및 함유제품의 신고

# 4



##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및 함유제품의 신고

### 중점관리물질의 지정·고시(법 제2조제10호의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질

- 1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2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 3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노출될 경우 사람의 폐, 간, 신장 등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4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상기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법 제32조)

개 요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생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1)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 것 2)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
기간·방법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을 생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개별 제품의 0.1 중량퍼센트 초과)된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까지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함유제품신고서를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 사진 등과 함께 제출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법 제35조)

### 개 요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 내 함유물질안전정보를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

- 소비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하는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

- 1 해당 제품명
- 2 해당 제품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및 함량
- 3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제한 용도
- 4 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 5 해당 제품의 노출 시 대처방법 등 취급 시 주의사항



### 영업비밀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미제공 가능.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함.

## 벌칙

# 5





## 벌칙

###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법 제13조)

#### □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 누구든지 등록 또는 신고 등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여서는 안됨
- 환경부장관은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제조·수입·사용·판매 중지, 회수·파기 등 조치 명령 가능

### 벌칙 및 과태료(법 제50조~제54조)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법 제38조제1항)가 등록 미이행 등 법률 위반 시에는 수입자가 아닌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가능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
-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미등록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 등)을 위반한 자
-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한 자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 법 제18조제2항(유해성심사) 및 법 제24조제2항(위해성평가)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9조제1항(등록물질 등 양도자의 정보제공) 및 법 제35조제1항(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양도자의 정보제공)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간의 정보제공)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 법 제35조제2항(소비자 요청 시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양도자의 정보제공)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12조제2항(등록한 자의 신고) 및 법 제12조제3항(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 법 제29조제3항(등록물질 등 제공된 정보의 변경)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 과징금의 부과(법 제17조의2)

#### 개요

화학물질 제조·수입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매출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단일 사업장은 매출액의 최대 2.5% 부과 가능)

-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경우
- 2)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경우

#### □ (산정방법) 1일당 과징금 금액 × 위반행위를 한 기간

- (1일당 과징금 금액)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의 7,200분의 1 (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14,400분의1)
- (연간 매출액) 위반행위를 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
- (위반행위를 한 기간) 최초로 위법하게 제조·수입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기간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의 가중 또는 감경 가능



## □ 화평법 제도이행 담당 기관

담당업무	관할기관	연락처
화평법 관련 상담, 문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02) 6050-1306~7
등록신청 개별제출 확인 선입/해입	국립환경과학원	032) 560-7216/7244/7227
사전신고 공동등록 협의체 가입	한국환경공단	032) 590-4742/4734/4735/4737

※본 자료는 '18.10.22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